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3나73762(본소), 2023나73779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등 ·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반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3나73762(본소), 2023나73779(반소) 판결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5. 25 선고 2022가단3808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론종결 2024. 7. 26.

판결선고 2024. 10. 1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5. 25. 선고 2022가단3808(본소),
2023가단1592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지급청구에 관한

피고(반소원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2,200,000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3. 소송 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1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[본소]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, 1)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5. 자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37,000,000원을 지급하고, 2) 2,897,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1. 29.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1) 부터 2023. 3. 3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청구 및 대출금 채무 인수 청구를 취하하였다).

[반소] 원고는 피고에게 1) 53,000,000원2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) 모든 소득을 증거로 제출하며, 3) 피고의 정신적, 시간적,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(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반소를 제기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

반소청구 중 재산분할금 35,000,000원 지급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나머지 반소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)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04. 12. 4.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(H, I)를 두었고 2022. 6. 15. 협의이혼하였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위 협의이혼 즈음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, 위 부동산에는 원고가 2018. 1. 19.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134,40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(이하 ‘이 사건 대출금 채무’ 및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.

다. 원고와 피고는 2022. 3. 25. 이혼협의 및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는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(이하 ‘이 사건 협의’라 한다).

- 원고와 피고는 2022. 2. 3. 이혼에 합의한다.
-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한다.
- 원고는 2022. 3.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.
-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.
- 이 사건 부동산 매입금액 1억 7천만 원 중 대출금 잔액 1억 원을 제외하고 7천만 원의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3천 5백만 원씩 분할하기로 한다(위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고, 피고가 원고에게 3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)
- C에 대한 차입금 2천만 원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천만 원씩 분담하여 상환하기로 하되,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피고가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(따라서 피고

는 4천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D은행펀드통장에 있는 800만 원을 원고가 소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 7백만 원을 지급한다).

○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3천 7백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를 완료한 후 서로 합의한 방식으로 지급한다.

라. 제1심판결 이후 피고는 2023. 8. 30.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,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.

마.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거주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호증,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사실,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2022. 7. 9. 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). 살피건대,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상대방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, 이 사건 협이가 아닌 원고와 다른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바,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거나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관련된 반소라 할 수 없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.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3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1) 원고

가)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의에 따라 37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제1청구).

나)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위 대출금 채무 승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22. 3.까지의 대출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

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,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D 주식회사에 2022. 4.부터 2022. 10.까지의 대출이자 합계 2,897,118원(= 매월 414,874원 × 7개월)을 지급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,897,1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제2청구).

2) 피고

가)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는바, 위 협의는 합의해제되었다.

나) 원고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,2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위 양육비 채권으로 원고의 위 협의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이 사건 협의가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

앞서 든 증거들, 갑 제4, 5, 7, 8호증,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협의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 이전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 절차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³⁾, 위 협의 내용과 달리 위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(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, 위 부동산을 계속 원고의 소유로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) 및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여부(피고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방법, 원고와 피고가 각 한명씩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)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의사합치에 이르러 위 협의를 합의해제하기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.

2) 제1청구에 관한 판단

가) 이 사건 협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37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, 피고가 2023. 8. 30.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의 위 협의에 기한 37,000,000원의 지급 채무가 2023. 8. 30.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,
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위 협의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이 사건 협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22. 3.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,200,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, 피고의 매월 1,200,000원 양육비 채권은 2022. 3.경부터 매월 각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022. 3.분부터 2024. 7.분까지 합계 34,800,000원(= 월 1,200,000원 × 29개월)의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, 2024. 7.경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, 피고가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협의에 기한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4. 7.경에 소급하여 피고의 양육비 채권인 34,800,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다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잔존 금액 2,200,000원(= 37,000,000원 - 34,800,000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) 제2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든 증거들,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(매월 413,874원)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,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3.까지의 대출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. 4.부터 2022. 10.까지의 대출이자 합계 2,897,118원(= 매월 413,874원 × 7개월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그러나 한편, 피고가 2023. 8. 30. 원고에게 위 대출이자 2,897,118원을 포함한 5,170,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피고의 위 2,897,118원 지급 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

있어 인용하며,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,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나머지 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진세리, 판사 허서윤, 판사 여인지

별지

- 1) 원고는 2023. 3. 3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, 위 서면에 앞서 제출한, 원고가 최초로 2,897,118원을 청구한 2022. 11. 2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.
- 2) 반소장에 기재된 ‘재산분할금 35,000,000원’과 ‘미지급 양육비 18,000,000원’을 합한 금액이다.
- 3)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 이전 후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하였고,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 이전 전에 피고가 D 주식회사에서 대출 자격 심사를 받을 것을 주장하였다.
- 4)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자신의 재산으로 D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.